

「철도안전법」 위반 행위 엄중 조치 ...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

- 작업자 사망 사고, 열차 추돌·탈선 등 총 3건에 대해 7억 8천만 원 부과

-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,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*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.

* 서울교통공사 3.6억원, 한국철도공사 3억원, 국가철도공단 1.2억원

- 이번 조치는 '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,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0월 18일(금)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*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('24.6.9.), 서울역 KTX-무궁화호 열차 추돌·탈선 사고('24.4.18.),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전 열차운행('24.5.8.)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.

* (위원장) 철도안전정책관, (심의위원) 변호사·공공기관 연구원·공무원 등 9명

-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 「철도안전법」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('24년 6월 9일)

- '24년 6월 9일(일) 01: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.

- 이 사고는 전기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 설비에 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(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) 일부만 단전했고,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나(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) 이를 위반하여 발생했다.
-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(참고 1)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.

② 서울역 KTX-무궁화호 열차 충돌 및 탈선사고('24년 4월 18일)

- '24년 4월 18일(목) 09: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 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충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, 약 6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.
-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(철도안전법 시행규칙)되나 이를 위반하였고,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(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)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,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.
-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(참고 1)에 해당되어 한국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.

③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('24년 5월 8일)

-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, 신설된 철도시설(교량)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영업운행을 개시했다.
- 이는,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,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「철도안전법」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천만 원(참고1)의 과징금이 부과됐다.

④ 위와 별도로,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(자격정지 등)도 의결됐다.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‘**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**’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준영 (044-201-461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참고 1

과징금 제도개요 및 부과기준

□ 제도개요

-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일정규모 이상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「철도안전법」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
 - (안전관리체계)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하는 인력·시설·차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체계
 -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관리체계 유지 위반으로 간주

□ 부과 기준 (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)

금액단위 : 백만원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기준 및 금액		비고
가.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	법 제9조 제1항 제2호	1차 위반	2차 위반	③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관련
		120	240	
다.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)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	법 제9조 제1항 제3호	1명 이상 3명 미만	3명 이상 5명 미만	① 연신내역 감전사고 관련
		360	720	
다.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)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	법 제9조 제1항 제3호	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	② 서울역 추돌·탈선 사고 관련
		180	360	

참고 2

관련 규정

- 서울교통공사 「전기설비관리예규」 * ① 연신내역 감전사고 관련

제8조(점검 및 검사 방법) 점검 및 검사의 방법은 유지보수매뉴얼*을 참고하여 시행한다.

* (유지보수매뉴얼) TIE반을 작업(점검)할 때는 계통의 단전(완전단전)을 재확인하고 작업한다.

- 서울교통공사 「전기작업안전내규」 * ① 연신내역 감전사고 관련

제42조(고압절연장갑 취급 및 관리) 고압절연장갑의 취급방법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.

제44조(절연안전모) 절연안전모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착용하여야 한다.

1. 머리를 전기적,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순회 및 작업시는 절연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

-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* ② 서울역 추돌·탈선 사고 관련

제76조의4(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)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2.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

- 한국철도공사 「운전취급규정」 * ② 서울역 추돌·탈선 사고 관련

제43조(유도신호의 지시) ② 역장은 제1항에 따라 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에는 정차 위치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수신호 현시위치에 열차 정지 표지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66조(신호 및 진로의 주시) ①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각종 신호, 전호 및 표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.